

신용보증약정서(개별거래용)

본인은 귀 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약칭함)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며, 본인과 (연대)보증인은 연대하여 아래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겠음.

제1조(신용보증의 부탁)

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회사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함.

1. 신용보증원금한도액 : 금 貳億(이억) 원
2. 신용보증기간 :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
3. 종속채무 : 귀 회사와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제1호의 신용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 종속채무

제2조(신용보증방법 등)

- ① 귀 회사는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하며,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귀 회사와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.
- ② 귀 회사는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(개별보증)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함.
- ③ 본인과 보증인은 주채무가 분할 대출되는 경우에는 귀 회사가 신용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보증하여도 이의 없겠음.

제3조(주채무 이행의무)

본인과 보증인은 귀 회사가 신용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귀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.

제4조(사전구상)

-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귀 회사로부터의 통지,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회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회사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겠음.
 1.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,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,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
 2.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
 3.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
 4.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
 5. 전국은행연합회의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 의한 신용불량정보(관련인 정보 포함)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
 6. 귀 회사가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회사와 채권자 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
 7.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도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

되는 때

-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및 보증인은 귀 회사에 대한 상환의무 또는 주채무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채무 이행 전에 귀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 없겠으며, 귀 회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 하겠음.
- ③ 제1항에 의한 사전상환금을 다음 각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겠으며 이에 동의함.
 - 1. 귀 회사가 신용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
 - 2. 귀 회사가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 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
- ④ 제1항의 사전상환금을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귀 회사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귀 회사가 보증채무 이행 시 적용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의 합계액이 귀 회사에 상환되는 것으로 보기로 함.

제5조(통지의무)

- ① 본인은 주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귀 회사에 통지하겠음.
- ② 채권자와 본인 사이에 주채무의 경계, 상계, 면제, 혼동,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 등 이 약정에 의한 귀 기금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, 본인은 곧 그 사실을 귀 회사에 통지하겠음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귀 회사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제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그 금액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며 곧 변제하겠음.

제6조(담보 등)

- ① 본인은 신용변동, 담보가치의 감소,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귀 회사가 승인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.
- ② 제1항의 담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때, 또는 가격의 하락 등으로 담보가 부족하게 된 때, 또는 보증인의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.
- ③ 담보는 귀 회사에서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, 본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겠음.

제7조(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등)

귀 회사의 보증채무 이행방법, 시기, 금액 등은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근거한 귀 회사의 결정에 위임함.

제8조(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)

- ① 귀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귀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본인과 보증인이 이를 완제하는 날까지 월 1%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.
- ②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도 귀 회사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

가산하여 상환하겠음.

1. 귀 회사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
2. 귀 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,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

제9조(변제 등의 총당순서)

변제 또는 귀 회사의 회수액이 채무잔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수 있기로 함.

제10조(연대보증인)

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함.

제11조(대위담보권에 관한 특약)

본인이나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설정한 담보를 귀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대위한 경우에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동의함.

이상과 같이 약정함. 끝.

2014. 12. 1.

신용보증의뢰인	(주소)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95-12		확인란
	(상호) 주식회사 개성금속 (대표자 성명/漢子) 金 秀 京 (대표자 성명/한글) 김 수 경 (주민등록번호) 500125-2047235	1.신규 2.추가 3.교체	
연대보증인	(주소)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8-1 장미아파트 2동 206호		
	(성명/漢子) 金 秀 京 (성명/한글) 김 수 경 (주민등록번호) 500125-2047235	1.신규 2.추가 3.교체	
연대보증인	(주소)		
	(성명/漢子) (성명/한글) (주민등록번호)	1.신규 2.추가 3.교체	

우방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